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직업안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방식·절차와 관계기관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영 제28조제1호의 준수사항이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28조)

- 1)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25조제1항제4호)됨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28조제1호를 삭제함.

- 2)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종전의 법 제25조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제6호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이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나.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 및 관계기관 통보 사항 신설 (안 제34조의3)

- 1)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당사자에 관한 사항, 해당 구인광고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2)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권한의 위임 조문 정비(안 제37조)

- 1)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 2)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3호”를 “법 제25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해당 구인광고의 제목, 게시 매체 및 인터넷 주소 등 그 식별에 필요한 사항
3.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 다만,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②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구인광고에 대한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 수사항) <u>법 제25조제3호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u> <u>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u> <u>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u> <u>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u> <u>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u> <u>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u> <u>않을 것</u> 2. ~ 6. (생 략) <u><신 설></u>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 수사항) <u>법 제25조제1항제6호-</u> ----- -----. <u><삭 제></u> 2. ~ 6. (현행과 같음) <u>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u> <u>조치명령 방법 등) ① 고용노동</u> <u>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1항에</u> <u>따라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 게</u> <u>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려는</u> <u>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하</u> <u>다)로 하여야 한다.</u> 1. <u>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u> <u>주소</u> 2. <u>해당 구인광고의 제목, 게시</u> <u>매체 및 인터넷 주소 등 그 식</u>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에게 위임한다.

1. ~ 5. (생략)

<신설>

별에 필요한 사항

3.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제
출 방법 및 기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직자
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말, 전화, 휴
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
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
닌 방법으로 먼저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
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구
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
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

6. ~ 10. (생략) <u><신설></u>	<u>른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 다만,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u> 6. ~ 10. (현행과 같음) <u>②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구인광고에 대한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336